

2023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8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2023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 대상 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 공고일로부터 지정일 1년 미만인 기관 및 평가대상 기간 안전보건진단 실적이 없는 기관은 평가 제외

2. 평가자: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

3. 평가 대상 기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수행한 업무 전체

4. 평가 방법: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일)

5. 평가 기준: 운영체계(400점)와 업무성과(600점)로 구분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 등급 결정

등 급	기준(합계 점수)	등 급	기준(합계 점수)
S등급	900점 이상	C등급	600점 이상 700점 미만
A등급	800점 이상 900점 미만	D등급	600점 미만
B등급	700점 이상 800점 미만		

·평가 운영위원회는 평가 대상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받는 경우 심의를 통해 평가 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평가거부' 기관으로 보고 및 결과 공표함

6. 평가 일정

· 평가 실시: 2023. 5. 30. ~ 2023. 6. 30.(방문 평가일은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

· 평가 결과(절대점수) 통보: 2023. 7.(예정)

· 이의 제기 접수 및 처리: 2023. 7.(예정)

※ 이의 제기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해 재평가 검토·심의

※ 평가근거, 절차방법 및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 최종 평가 결과 및 등급 공표: 2024. 1.(예정)

※ 평가대상 기간 안전보건진단 실적이 없는 기관은 “평가제외(실적없음)”으로 공표

7. 자체평가보고서 및 사전 자료, 우수 진단보고서 제출(덧붙임 참조)

· 제출 기한: 5월 12일(금)

· 자체평가보고서 및 사전 자료 제출 양식 다운로드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23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실시 공고

–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기관은 K2B에 제출 요망

※ K2B 미 가입 기관은 기관 내 평가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업무관리자로 회원가입

(신규 지정 기관에 한해 회원가입 시 10점 가점 부여)

– 자체평가보고서 등록 여부(+10) 및 자체평가의 적정성(+10)에 따라 점수(가점) 부여

· 사전제출자료 미제출 시 B.3.1 진단사업장 만족도 지표 “0점” 부여(만족도 조사 불가)

· 우수 진단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시 B.4.1 안전보건진단 우수사례 지표 “0점” 부여(우수 진단 보고서 심사 불가)

8. 기타 문의: 기관 평가 담당자(052-7030-103, 108 / 052-7033-312, 307)

2023년 4월 28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